#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상감사 이행실태 결과보고

## Ⅰ 감사개요

- **감사기간 :** ’16.11.7 ~ 11.10(4일간)
- **감사인원 :**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등 5명
- **감사범위 :** ’ 14.1.1.부터 처리한 일상감사 업무

## Ⅱ 감사결과

### No. 1 감사결과 처분요구

| 부서·기관명 | 시행년도 (처분요구일) | 처분요구 종류 | 재정상조치 | | 신 분 상 조치인원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조치방법 | 금 액 | | |
|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(기획행정팀) | 2016 (2017. 1.) | 통보 | - | - | - | |

| 제 목 | 일상감사 대상 과다 지정 및 일상감사 실시 미흡 |
|---|---|

【 지적내용 】

❍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(이하 “여성가족재단”이라 한다) 기획행정팀에서는 여성가족재단 「감사규정」 제4조 제4항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· 타당성 등을 점검 ·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‘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상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’(대표이사 방침, 2014. 7. 2.)로 일상감사의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 그 중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〔표 1〕과 같이 계약업무, 예산관리 업무, 주요정책 집행업무, 그 밖에 대상업무로 정하였으며, 2014. 1. 1.부터 2016. 10. 10.까지(이하 “최근 3년간”이라 한다) 96개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다.

〔표 1〕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실시 건수

| 일상감사 대상업무 | | 일상감사 실시 건수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계 | 2014 | 2015 | 2016.10.10. |
| 계 | | 96 | 37 | 43 | 16 |
| 계약업무 | 재단 전체 계약 건(200만원 이상) | 79 | 25 | 38 | 16 |
| 예산관리 업무 | 업무추진비, 기간제근로자보수, 관서업무비, 강사료 및 원고료 등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| 0 | 0 | 0 | 0 |
| 주요정책 집행업무 |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, 대표이사 결재 및 이사회 등 주요회의 부의사항 중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 의뢰한 업무 | 14 | 10 | 4 | 0 |
| 그 밖에 대상업무 | 예산·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 제·개정 사항, 직원 임용 등 인사관리 및 복무에 관한 계획수립, 수탁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| 3 | 2 | 1 | 0 |

❍ 대상업무별 일상감사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

- 계약업무의 일상감사 대상을 200만원(여성가족재단 「회계규정 시행내규」 제9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금액) 이상인 지출로 정하고 있으나, 〔표 2〕와 같이 최근 3년간 200만원 이상인 지출 176건 중 79건(45%)만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다.

〔표 2〕 계약 및 일상감사 실시 현황

| 계 | | 2014 | | 2015 | | 2016.10.10.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약건수 | 일상감사 건수 | 계약건수 | 일상감사 건수 | 계약건수 | 일상감사 건수 | 계약건수 | 일상감사 건수 |
| 176 | 79 | 61 | 25 | 57 | 38 | 58 | 16 |

- 예산관리 업무의 일상감사 대상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으나, 〔표 3〕과 같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예산 관리업무 1,321건 중 한건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.

〔표 3〕 예산관리 일상감사 대상업무 현황

| 일상감사 대상업무 | 계 | 2014 | 2015 | 2016.10.10. |
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1,321 | 541 | 394 | 386 |
| 업무추진비 | 611 | 303 | 171 | 137 |
| 기간제근로자보수 | 30 | 11 | 11 | 8 |
| 관서업무비 | 606 | 202 | 188 | 216 |
| 강사료 및 원고료 | 74 | 25 | 24 | 25 |

- 주요정책 집행업무의 일상감사 대상을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, 대표이사 결재 및 주요회의 부의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,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업무만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, 매뉴얼 제정 및 사업부서 교육 등이 이루어진 2014년에는 10건을 실시한 반면, 2015년 4건, 2016년에는 일상감사 실적이 없었다.

- 그 밖에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예산·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 제·개정 사항, 인사관리에 관한 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, 〔표 4〕와 같이 최근 3년간 대상업무 90건 중 3건(3.3%)만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, 2016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.

〔표 4〕 그 밖의 일상감사 대상업무 현황

| 일상감사 대상업무 | 계 | 2014 | 2015 | 2016.10.10.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90(3) | 29(2) | 30(1) | 31 | ※ ( ) 안은 일상감사 실시 건수 |
| 예산회계등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 제·개정 | 3(1) | - | 2(1) | 1 | |
| 직원 임용 등 인사관리 및 복무에 관한 계획수립 | 84(2) | 28(2) | 27 | 29 | |
| 수탁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| 3 | 1 | 1 | 1 | |

❍ 이처럼 일상감사 대상업무 대비 일상감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대상업무를 지정할 때 재단의 실정이나 감사인력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정하였고, 2014. 7. 매뉴얼을 만든 후 감사일 현재까지 일상감사 대상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관심부족 속에 일상감사 의뢰된 사업만 실시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.

❍ 한편 여성가족재단은 정원 53명(현원 53명)의 소규모 조직이며, 〔그림 1〕과 같이 3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, 감사부서 없이 경영기획실 기획행정팀의 감사인력 1명이 일상감사와 기타 감사·청렴·정보공개·예산 관련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어, 많은 양의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.

〔그림 1〕 여성가족재단 조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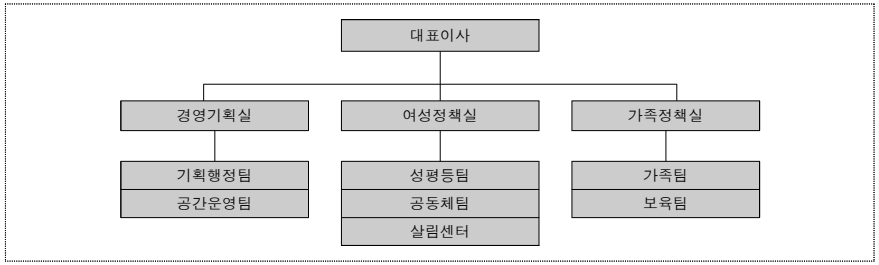


❍ 따라서 여성가족재단은 감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일상감사의 실효성이 낮은 업무는 일상감사 대상업무에서 제외하고,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정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.

**【조치할 사항】**

❍ **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**

- 일상감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사인력, 재단 실정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정비하고, 대상으로 정한 업무는 빠짐없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**(통보)**